

2021년

# 중대재해처벌법령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 3	제1조(목적) ..... 3
제2조(정의) ..... 3	제2조(직업성 질병자) ..... 3
	제3조(공중이용시설) ..... 7
<b>제2장 중대산업재해</b>	<b>제2장 중대산업재해</b>
제3조(적용범위) ..... 17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17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7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1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22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22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23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23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25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23	
<b>제3장 중대시민재해</b>	<b>제3장 중대시민재해</b>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27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27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35</p> <p>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35</p>	<p>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9</p> <p>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0</p> <p>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4</p>
<p><b>제4장 보칙</b></p>	<p><b>제4장 보칙</b></p>
<p>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36</p> <p>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36</p> <p>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37</p> <p>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37</p> <p>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38</p>	<p>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36</p> <p>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39</p>
<p>부 칙 ..... 39</p>	<p>부 칙 ..... 39</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21. 1.26., 법률 제17907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li> <li>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li> <li>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li> <li>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21.10. 5., 대통령령 제32020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직업성 질병자)</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직업성 질병</b>(제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li><li>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li><li>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li><li>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노관 기능 손상, 급성 세노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li><li>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li><li>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li><li>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li><li>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li><li>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li></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p> <p>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p> <p>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p> <p>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p> <p>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p> <p>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p> <p>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li> <li>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li> <li>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li> <li>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li> <li>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li> <li>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li> <li>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li> <li>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li> </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p> <p>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p> <p>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p>	<p><b>제3조(공중이용시설)</b>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p> <p>[별표 2] <b>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b>(제3조제1호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li>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li><li>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li><li>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li><li>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li><li>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li><li>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li>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li>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li></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li> <li>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li> <li>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li> <li>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li> </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p> <p>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p> <p>비고</p> <p>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p> <p>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p> <p>[별표 3]  <b>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b>(제3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15 972 1765 1182"> <tr> <td data-bbox="1015 972 1183 1011">1. 교량</td> <td data-bbox="1185 972 1765 1182"></td> </tr> <tr> <td data-bbox="1015 1012 1183 1051">가. 도로교량</td> <td data-bbox="1185 1012 1765 1182">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td> </tr> </table>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001 265 1183 418">나. 철도교량</td> <td data-bbox="1187 265 1789 418">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td> </tr> <tr> <td data-bbox="1001 421 1183 801">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td> <td data-bbox="1187 421 1789 801">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td> </tr> <tr> <td data-bbox="1001 803 1183 1150">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堤) 및 호안 (護岸)            나. 계류시설         </td> <td data-bbox="1187 803 1789 1150">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td> </tr> <tr> <td data-bbox="1001 1153 1183 1215">4. 댐</td> <td data-bbox="1187 1153 1789 1215">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td> </tr> </table>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堤) 및 호안 (護岸) 나. 계류시설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堤) 및 호안 (護岸) 나. 계류시설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001 268 1183 354"></td> <td data-bbox="1187 268 1785 354">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td> </tr> <tr> <td data-bbox="1001 357 1183 589">5. 건축물</td> <td data-bbox="1187 357 1785 589">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td> </tr> <tr> <td data-bbox="1001 592 1183 811">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td> <td data-bbox="1187 592 1785 811">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td> </tr> <tr> <td data-bbox="1001 813 1183 992">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td> <td data-bbox="1187 813 1785 992">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td> </tr> <tr> <td data-bbox="1001 995 1183 1199">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td> <td data-bbox="1187 995 1785 1199">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td> </tr> </table>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li> <li>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li> <li>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li> <li>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li> <li>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li> <li>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li> <li>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li> <li>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li> <li>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li> <li>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li> <li>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li> </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li><li>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li><li>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li><li>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li><li>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li><li>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li><li>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li><li>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li><li>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li></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data-bbox="1001 265 1785 45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p> </div> <p>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p> <p>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p> <p>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p> <p>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p> <p>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p> <p>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p> <p>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p> <p>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p> <p>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p> <p>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p> <p>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7. “중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p> <p>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p>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p><b>제2장 중대산업재해</b></p>	<p><b>제2장 중대산업재해</b></p>
<p><b>제3조(적용범위)</b>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b>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p>	<p><b>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b>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li> <li>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li> </ol>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li> <li>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li> <li>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li> </ul> </li> <li>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li> <li>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li> </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p> <p>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p> <p>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p>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p> <p>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p> <p>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p> <p>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p>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p> <p>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p> <p><b>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b>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li> <li>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li>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li> </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b>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b>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b>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p>	<p>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b>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b>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li> <li>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li> </ol> <p><b>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b>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b>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b>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li> <li>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li><li>2. 교육일정</li><li>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li></ol>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p> <p>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p> <p>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p> <p>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p> <p><b>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b>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b></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p> <p>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p>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li> <li>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li> <li>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p> <p>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3. 개별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015 979 1771 1200">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 법조문</th> <th colspan="3">과태료</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td> <td>법 제8조제2항</td> <td>1천만원</td> <td>3천만원</td> <td>5천만원</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중대시민재해</b></p> <p><b>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b>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li> <li>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li> </ol> <p>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중대시민재해</b></p> <p><b>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b>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li> <li>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li> <li>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li> <li>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li> <li>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li> <li>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li> <li>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li> <li>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li> </ol> </li> </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p> <p>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p> <div data-bbox="1001 439 1789 121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li> <li>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li> <li>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li> <li>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li> <li>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li> <li>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li> <li>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li> <li>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li> <li>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li> <li>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li> </ol>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화약류</p> <p>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p> <p>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p> <p>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b>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b>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받기 1회 이</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li>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li><li>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ol> <p><b>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b>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li></ol> <p>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p> <p>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p> <p>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p> <p>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p> <p>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p> <p>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p> <p>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p> <p>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p> <p>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p> <p>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p> <p><b>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b>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li><li>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li>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li></o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b>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b>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li> <li>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li> </ol>	<p>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보칙</b></p> <p><b>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b>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보칙</b></p> <p><b>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b>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li> <li>2. 해당 사업장의 명칭</li> <li>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li> <li>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li> <li>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li> <li>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b>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b>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p>	<p>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li><li>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li><li>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li><li>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li><li>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li><li>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li></ul> <p><b>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b>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li><li>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li><li>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li><li>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li></ul> <p>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26.] 제16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lt;제17907호, 2021. 1. 26.&gt;</p> <p><b>제1조(시행일)</b>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b>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p>	<p><b>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b>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lt;제32020호, 2021. 10. 5.&gt;</p> <p>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